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60
------------	-------

발의연월일 : 2018. 9. 6.

발의자 : 박주현 · 장병완 · 박선숙
윤영일 · 황주홍 · 김광수
윤소하 · 김종회 · 장정숙
천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가를 침식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감소 등을 초래하고 있어 바닷가와 무인도서로 대표되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보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침식”을 “침식 및 해수면 상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다음의 기본이념에 따라 보전·이용 및 개발되어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u>침식</u> 등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p> <p>5. (생 략)</p>	<p>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침식</u> <u>및 해수면 상승</u>----- -----</p> <p>5. (현행과 같음)</p>